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35호 2021. 9. 3(금)

<b>선 람</b>	기관의 장

<b>공 고</b>
------------

- 남원시 공고 제2021-1745호 공시송달공고 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21-1758호 도로지정공고 ----- 3
- 남원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1-36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4
- 남원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1-37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----- 1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공고 제2021 - 1745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『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1. 9. 6. ~ 2021. 9. 21. (15일간)
2. 공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, 시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
3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	소유자 현황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	성 명	주 소		위 치	건축물현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(말소일 : 2021.8.31.)	조○용	남원시 동충동 27-4	건축물 부존재	남원시 동충동 27-4	주1층 블럭조/스리브 창고 8.61㎡

#### 4. 기타사항

가.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(☎063-620-659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8. 31.

남 원 시 장

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남원시장

귀하

#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◎ 남원시 공고 제 2021 -1758호

## 도로지정공고

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1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㎡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
2021-2 3	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246(대)	양*철	2020-건축과- 증축신고-113	24.32	1.8	36	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246-1(전)	36	양*철

## 남원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36호

『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2 일

남 원 시 장

### 1. 개정 이유

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 권익의 증진 및 형평성 도모

### 2. 주요 내용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특정기관에 대한 연체금 면제 조항 삭제(안 제2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환경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81 /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036-207, 환경사업소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5802), FAX(063-620-6854) 및  
직접방문 등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사업소(☎063-620-580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: 붙임

#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1. 9. .  
 제출자 : 남 원 시 장  
 제안설명자 : 환경사업소장

## 1. 개정이유

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 권익의 증진 및 형평성 도모

## 2.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특정기관에 대한 연체금 면제 조항 삭제(안 제2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, 「하수도법 시행령」

나. 그 밖의 사항

### 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9. 2. ~ 2021. 9. 22.(20일간) \*초일불산입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비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 : 비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비대상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본문 중 “징수한다.”를 “징수한다. (연체금 = 미납요금 × 3/100 × 연체 일수/월력(月曆) 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와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연체금 및 독촉)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, 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,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연체금 = 미납요금 × 3/100 × 연체 일수/월력(月曆)기준일수</p>	<p>제27조(연체금 및 독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징수한다.(연체금 = 미납요금 × 3/100 × 연체 일수/월력(月曆)기준일수)</p>

## 규제 예비심사 검토의견서

□ **검토대상** : 「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□ **관계법령** : 「하수도법」, 「하수도법 시행령」

□ **검토 방향**

○ 규제의 신설·강화 및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포함 여부

□ **검토의견** : **비 심사대상**

○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,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한 공공하수도  
사용료 등 연체금 감면을 삭제하는 조항은, 행정규제가 아님

###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**제3조(작성대상)**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 남원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 37호

『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』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2일

남 원 시 장

### 1. 개정 이유

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 권익의 증진 및 형평성 도모

### 2. 주요 내용

「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16조제5항 군부대 연체금 면제 조항 삭제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환경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81 /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036-207, 환경사업소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(063-620-5802), FAX(063-620-6854) 및  
직접방문 등

4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사업소(☎063-620-580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: 붙임

#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1. 9. .  
 제출자 : 남 원 시 장  
 제안설명자 : 환경사업소장

## 1. 개정이유

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금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시민 권익의 증진 및 형평성 도모

## 2. 주요내용

「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16조제5항 군부대 연체금 면제 조항 삭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, 「하수도법 시행령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9. 2. ~ 2021. 9. 22. (20일간) \*초일불산입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비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 : 비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비대상

남원시 규칙 제 호

##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감면) ⑤ 군부대에 대해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.	<삭 제>

## 규제 예비심사 검토의견서

**검토대상** : 「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

**관계법령** : 「하수도법」, 「하수도법 시행령」

**검토 방향**

○ 규제의 신설·강화 및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포함 여부

**검토의견** : **비 심사대상**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 반영이며, 형평성을 위한 조항삭제는 행정  
규제가 아님



**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
비용추계서**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**제3조(작성대상)**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